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377호

「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123호, 2021.9.27.)
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
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
다.

2023년 11월 6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」 일부개정안

1. 개정이유

- 철도의 신설(개량)사업의 개통을 위한 종합시험운행을 내실있고 탄력적으로
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'본선'과 '측선' 용어 정의 신설(안 제2조)

- 「도시철도건설규칙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인용하여 종합시험운행을
생략할 수 있는 범위로써 '측선' 등 정의

나. 열차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설비의 경우, “시설물검증시험 과정에서”를
“영업시운전 시행 전까지”로 하고, 사전점검 결과 보완사항이 경미한 경우,

시설물검증시험 과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기한을 “영업시운전 시행 전까지”로 개정(안 제8조)

다. 열차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설비의 경우, 시설물검증시험 점검항목은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전문기관(교통안전공단)과 협의하고, 영업시운전 시험계획에 포함되도록 단서 신설(안 제12조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철도시설안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→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
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
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시설안전과
- 전화 : 044-201-4889 / 팩스 : 044-201-5673